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Fair Trade Compliance Operating Guidelines

업무표준 번호 : H0-법무-지침-0058

제 · 개 정 번 호 : 04

제 · 개 정 일 자 : 2023. 03. 08.

2015.09.25. 제 정

2019.12.16. 1차 개정

2020.10.07. 2차 개정

2022.08.24. 3차 개정

2023.03.08. 4차 개정

작 성 자 : 백 승 국
(법무실 윤리법규부 차장)

검 토 자 : 고 영 민
(법무실 윤리법규부장)

승 인 자 : 이 상 욱
(법무실장)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법무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기준서 No H0-법무-지침-0058	
		개정·페이지 04 2/17	
		제·개정일자 2023. 03.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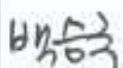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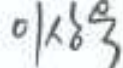
1. 사용 구분

☒ 전사 적용

☐ 해당 처·실 / 해당 사업소 적용

☐ 작성부서만 적용(부서명 : _____)

2. 작성 부서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백승국		'23. 3. 7	고영민		'23. 3. 7	이상욱		'23. 3. 7

3. 관련부서 합의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4. 업무표준 관리부서 검토 : 작성부서와 동일, 검토완료

5. 일상감사(전사공통적용 지침·기준)

직 책	성 명	검토 결과	일 자
일상감사팀장	정준수	적 합	'23. 3. 7

담당 : 법무실 백 승 국 (☎061-4611)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법무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기준서 No	H0-법무-지침-0058	
		개정 · 페이지	04	3/17
		제 · 개정일자	2023. 03. 08	

제 · 개정 이력						
Ver	개 정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승인일자	비 고
00	공정거래 업무처리 지침 제정	김형남	허영욱	정홍화	2015.09.25.	제 정
01	수의계약 자기진단 절차 개선 - 자기진단 대상 확대 : 5억원 →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 자기진단 항목 추가 : 비위행위 해임자와의 수의계약 신중 검토	이호준	양지웅	정홍화	2019.12.	개정
0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 자율준수관리자 권한 및 직무 -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 자율준수 교육시행 - 자율준수 모니터링 시행	이광태	권혁태	정홍화	2020.10.07	개정
03	기술탈취 행위 금지 조항 신설	백승국	고영민	이상욱	2022.08.24.	개정
04	입찰담합 관여 행위 금지조항 신설	백승국	고영민	이상욱	2023.03.08.	개정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법무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기준서 No H0-법무-지침-0058	
		개정·페이지	04 4/17
		제·개정일자	2023.03.08

차 례

제1장 총 칙	6
제1조 목 적	6
제2조 용어의 정의	6
제3조 적용범위	7
제2장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7
제4조 자율준수 원칙	7
제5조 수의계약 시 공정거래 자기진단	7
제6조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8
제7조 일괄재발주 제한	8
제8조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8
제9조 부당한 공동행위 방지	8
제10조 수의계약 전자입찰시스템 사전공고	9
제11조 공정거래 위반행위 통지 및 처리	9
제3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사건 처리	9
제12조 신고사건 처리	9
제13조 직권조사사건 처리	9
제4장 기업집단 지정 및 신고	10
제14조 (삭제)	10
제15조 기업결합신고 및 계열편입신고	10
제5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10
제16조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10
제17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직무	11
제18조 자율준수 전담부서의 직무	11
제19조 자율준수 담당자의 직무	11
제20조 자율준수편람	11
제21조 자율준수 교육시행	12
제22조 자율준수 모니터링	12
제23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12
제24조 자율준수 서약서	12

 법무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기준서 No		H0-법무-지침-0058	
				개정 · 페이지	04 5/17
				제 · 개정일자	2023.03.08

제6장 기 타	_____	12
제25조 유효성 평가	_____	12
제26조 불 임	_____	12
【붙임 1】 공정거래 자기진단 업무흐름도	_____	14
【붙임 2】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I	_____	15
【붙임 3】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II	_____	16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법무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기준서 No	H0-법무-지침-0058	
		개정 · 페이지	04	6/17
		제 · 개정일자	2023.03.08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공사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정거래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하며, 법무규정상의 법무담당부서를 말한다.)”란 공정거래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계약요청부서”란 필요에 따라 물품 · 공사 및 용역의 계약을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계약담당부서”란 계약요청부서의 계약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계약업무 관련 직원”이란 공사가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되는 계약업무 또는 그 이전단계에서 계약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그 직상급자를 말한다.
5. “업무주관부서”란 본사 처(실) 및 사업소의 분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6.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국내법 규를 말한다.
7. “자율준수”란 공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8.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과 실행방안을 정한 것을 말한다.
9.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0.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담하는 공정거래 총괄부서를 말한다.
11. “자율준수 담당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주관부서 각 담당자를 말한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당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하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법무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기준서 No	H0-법무-지침-0058	
		개정 · 페이지	04	7/17
		제 · 개정일자	2023.03.08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공사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임직원과 공사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 활동에 적용된다.
- ② 공사가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제4조(자율준수 원칙)

- ① 모든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계약업무 관련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5조에서 정한 ‘수의계약 시 공정거래 자기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의계약 시 공정거래 자기진단)

- ① 계약요청부서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붙임 2의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I」를 작성하여 계약요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계약요청부서는 제1항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결과,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총괄부서 또는 사업소 지정번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계약특수조건에 불공정 소지가 있는 경우
 2.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 ‘부적합’ 요건에 해당함에도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할 때
-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법률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법률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④ 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요청에 대하여 붙임 3의 자기진단 체크리스트Ⅱ를 작성하여 구매계획 수립 시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계약담당부서는 제4항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결과가 체크리스트의 ‘부적합’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약요청부서의 계약요청건을 반송하여야 한다.
- ⑥ 계약요청부서는 계약요청건이 반송된 경우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KEPCO KORER ELECTRIC POWER CORPORATION 법무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기준서 No H0-법무-지침-0058	
		개정 · 페이지	04 8/17
	제 · 개정일자		2023.03.08

제6조(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Article 6 (Prohibition of Unfair Support to Related Parties)

- ① 공사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자금, 자산·상품 및 인력지원을 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여 특수관계인 등을 지원하는 행위 등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The Corporation shall not engage in any act that may be considered as unfair support, such as providing funds, assets, goods, and manpower to related parties or other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unfairly, or supporting related parties by contracting under significantly favorable conditions.
- ② 공사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여부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In the case of large-scale internal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such as affiliates, the Corporation shall ensure that there is no violation of fair trade related laws.
- ③ 계약업무 관련 직원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계약에 있어 법령 또는 사규 상 수의계약 사유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3) Employees involved in contract work shall not enter into a private contract with a related party such as an affiliate if the reason for signing a private contract is not clear according to laws or regulations.

제7조(일괄재발주 제한) 공사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방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는 일괄재발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Article 8 Prohibition on Abuse of Position in Trade)

- ① 공사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및 경영간섭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The Corporation shall not unfairly use its position in trade to force the contract counterparties to provide profits, provide disadvantages, or interfere with management.
- ② 공사는 계약조건이 확정된 계약에 관하여 품셈착오 등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 또는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 (2) The Corporation shall not unilaterally recover or reduce the payment from the contract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법무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기준서 No	H0-법무-지침-0058	
				개정 · 페이지	04	9/17
				제 · 개정일자	2023.03.08	

counterparties for reasons such as mistakes in estimation with respect to a contract for which the terms of the contract have been finalized.

③ 공사는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그 직원을 파견 받아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공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The Corporation shall not have the employees dispatched by suppliers, etc. to perform the work of the Corporation without paying the compensation.

④ 공사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한 자 및 계약상대방에게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방이 소유하는 기술자료를 공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요구할 수 있다.

(4) The Corporation shall not require participants in the bidding conducted by the Corporation and the contract counterparties to provide technical data owned by the bidder or the contract counterparties to the Corporation or a third party. However, if a justifiable reason can be proved, the Corporation may require such data in compliance with fair trade laws.

⑤ 공사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유찰 방지를 위한 형식적 입찰참가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The Corporation shall not engage in bid-rigging activities such as requesting formal bid participation to prevent failure in bidding conducted by the Corporation.

제9조(부당한 공동행위 방지)

Article 9 (Prevention of Unfair Collaborative Acts)

① 계약담당부서는 경쟁입찰 계약 체결 시 공사의 “입찰담합포착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The contracting department shall prevent bid rigging from occurring by utilizing the Corporation's "Bid Rigging Detection System" when concluding competitive bidding contracts.

② 계약담당부서는 입찰업체들의 입찰담합 징후 포착을 위하여 조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The contracting department shall cooperate closely with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or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o detect signs of bid rigging by bidders.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법무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기준서 No	H0-법무-지침-0058	
		개정 · 페이지	04	10/17
		제 · 개정일자	2023.03.08	

제10조(수의계약 전자입찰시스템 사전공고)

- ① 계약요청부서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전자입찰시스템 사전공고를 통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 ② 계약요청부서는 전자입찰시스템 사전공고 결과, 회신의견에 대한 답변 및 면담 등 처리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정거래 위반행위 통지 및 처리)

-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에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 ② 총괄부서는 공정거래 위반행위 통지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이 지침 위반 결과가 드러난 경우 감사부서 및 업무주관부서에 통보한다.
- ③ 업무주관부서는 위반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사건 처리

제12조(신고사건 처리)

- ① 업무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거나 조사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업무주관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사건에 대한 소명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업무주관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소명자료와 공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총괄부서는 사내변호사 또는 법률고문, 일반변호사 등을 회사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직권조사사건 처리)

- ① 총괄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착수를 통보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업무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법무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기준서 No	H0-법무-지침-0058	
		개정 · 페이지	04	11/17
		제 · 개정일자	2023.03.08	

- ② 업무주관부서는 총괄부서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타 직권조사 업무처리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장 기업집단 지정 및 신고

제14조(삭제)

제15조(기업결합신고 및 계열편입신고)

- ① 공사는 공정거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등 기업결합신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 내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 ② 업무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공사는 공정거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8조에 따라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을 동일인 단독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이거나 대표이사를 임면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는 경우 등 계열편입신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 내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 ④ 계열편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제16조(자율준수관리자 선임)

- ① 공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총괄부서장으로 한다.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법무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기준서 No H0-법무-지침-0058	
		개정·페이지	04 12/17
	제·개정일자		2023.03.08

제17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직무)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
 2. 자율준수 이행 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총괄
 2. 자율준수 관련 지원 및 자문
 3. 자율준수 관련 교육 총괄
 4.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5.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여부 사전 모니터링 시행
 6.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

제18조(자율준수 전담부서의 직무)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2. 자율준수 관련 교육 시행
3.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4.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분석
5.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자율준수 담당자의 직무) 자율준수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 부서 업무수행 관련 공정거래 법령 위반행위 예방활동
2.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소속부서 직원 교육관리
3. 자율준수 이행 관련 소속부서 자료취합 및 제출
4.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관련 개선의견 제출

제20조 (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

 KEPCO KORER ELECTRIC POWER CORPORATION 법무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기준서 No H0-법무-지침-0058	
		개정·페이지	04 13/17
	제·개정일자		2023.03.08

용을 신속하게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율준수 교육시행)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담당자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시 집합, 온라인, 사외 위탁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자율준수 모니터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부서로부터 서면으로 그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경우,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임직원의 제재는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사규에 따른다.

제24조 (자율준수 서약서)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해 연 1회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기 타

제25조(유효성 평가) 이 지침은 2년을 주기로 유효성을 평가한다.

제26조(붙임)

- 【붙임 1】 공정거래 자기진단 업무흐름도
- 【붙임 2】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I
- 【붙임 3】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II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법무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기준서 No		H0-법무-지침-0058	
				개정 · 페이지	04 14/17
				제 · 개정일자	2023.03.08

부 칙 <2015. 9. 2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15.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6>

이 지침은 2019. 12.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07>

이 지침은 2020.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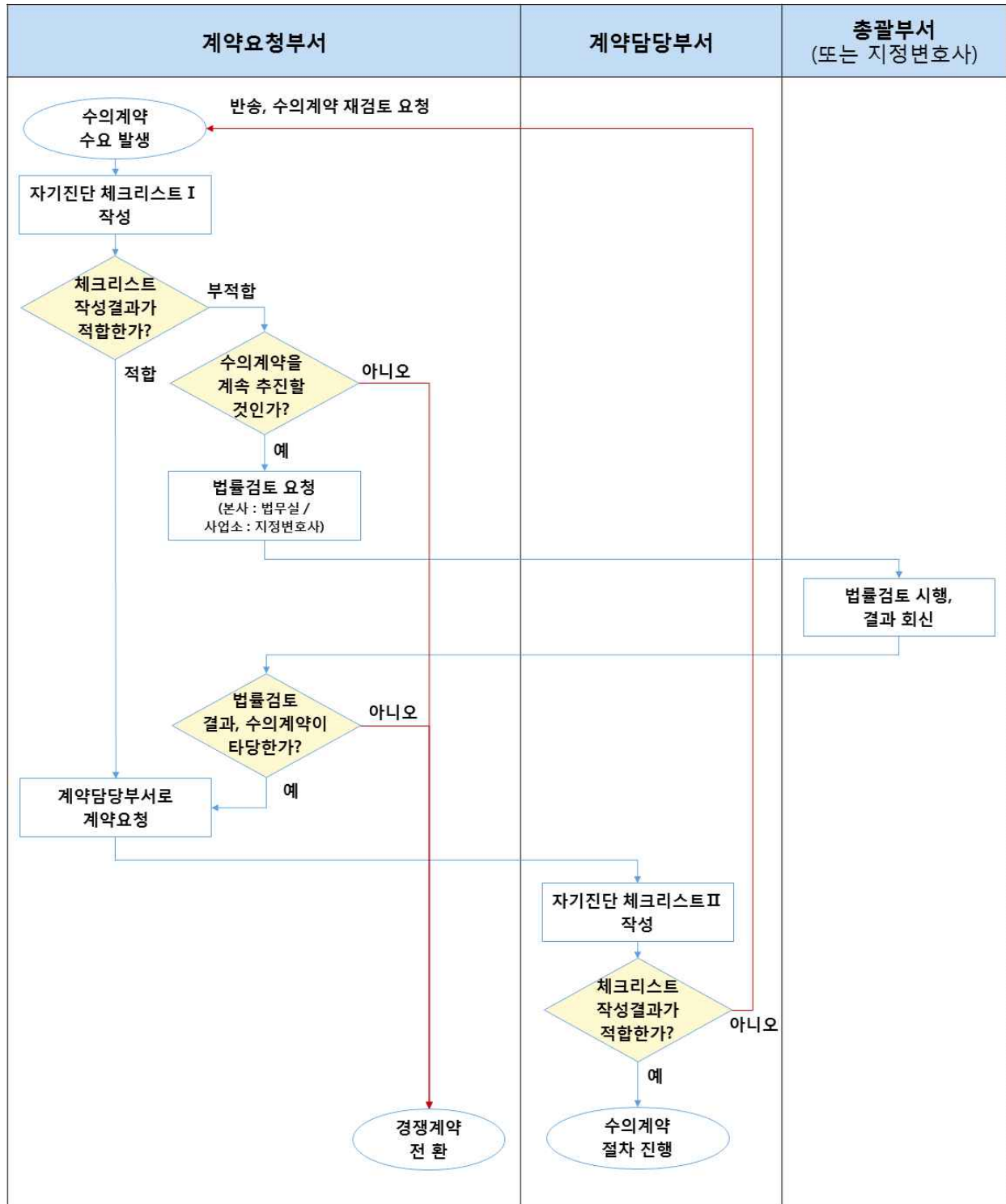
이 지침은 2022. 8.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

이 지침은 2023. 3. 8.부터 시행한다.

 법무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기준서 No	H0-법무-지침-0058	
			개정 · 페이지	04	15/17
			제 · 개정일자	2023.03.08	

【붙임 1】 공정거래 자기진단 업무흐름도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법무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기준서 No	H0-법무-지침-0058	
		개정 · 페이지	04	16/17
		제 · 개정일자	2023.03.08	

【붙임 2】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I (계약요청부서용)

계 약 명		작성일자	
관련문서번호		부서/담당자	

문항	체크리스트 항목	해당사항	부적합 요 건
1	수의계약 사유가 분명한가?	☐ A (수의계약 사유가 분명) ☐ B (수의계약 사유가 불분명)	B가 1개 이상인 경우 부적합
2	계약특수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정 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불공정 소지가 있는가?	☐ A (불공정소지 없음) ☐ B (불공정소지 있거나 잘 모르겠음) ☐ 해당없음(계약특수조건 없음)	
3	계약상대방이 계열회사 또는 우리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해당되는가? * 퇴직자 단체(퇴직자 단체 출자회사 포함) 또는 우리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	☐ A (해당되지 않음) ☐ B (해당되거나 잘 모르겠음)	모두 B인 경우 부적합
3-2	(위 3항의 답변이 B인 경우) 계약상대방 에게 거래상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가?	☐ A (과다이익 우려 없음) ☐ B (과다이익 우려가 있거나 잘 모르겠음)	
4	최근 5년 이내에 한전에서 비위행위로 해임된 자가 계약상대방이거나, 계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가?	☐ A (해당사항 없음) ☐ B (비위행위 해임자에 해당) * 비위해임자 성명 및 직책 :	모두 B인 경우 수의계약 재검토
4-2	(위 4항의 답변이 B인 경우) 계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입찰로 전환하거나 다른 자와의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는가?	☐ A (수의계약 불가피) * 반복유찰, 생산자 1인 한정 등 ☐ B (경쟁입찰 등으로 전환 가능 하거나 잘 모르겠음)	
5	설계금액 산정 시 시장가격을 기초로 적정하게 산정 하였는가?	☐ A (적정하게 산정) ☐ B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거나 잘 모르겠음)	B가 1개 이상인 경우 부적합
6	전자입찰시스템(SRM)상 의견조회 및 회신 절차를 이행 하였는가?	☐ A (이행하였음) ☐ B (이행하지 않았음) ☐ 해당없음(의견조회 대상 아님)	

- ☐ 체크리스트 작성결과 '부적합' 요건에 해당함에도 수의계약을 추진하려 할 경우 총괄부서(법무실) 또는 사업소 지정번호사에게 법률검토 요청
- ☐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요청시 본 체크리스트와 관련 법률검토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첨부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법무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기준서 No	H0-법무-지침-0058	
		개정 · 페이지	04	17/17
		제 · 개정일자	2023.03.08	

【붙임 3】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II (계약담당부서용)

계 약 명		작성일자	
관련문서번호		부서/담당자	

문항	체크리스트 항목	해당사항	부적합 요 건
1	수의계약 사유에 분명하게 해당 되는가?	☐ A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 B (수의계약 사유 불분명)	모두 B인 경우
1-2	(위 1항의 답변이 B인 경우) 계약요청 부서가 총괄부서 또는 지정번호사로부터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법률검토를 받았는가?	☐ A (법률검토를 받음) ☐ B (법률검토를 받지 않음)	
2	최근 5년 이내에 한전에서 비위행위로 해임된 자가 계약상대방이거나, 계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가?	☐ A (해당사항 없음) ☐ B (비위행위 해임자가 계약상대방 또는 그 대표자 · 임원임)	모두 B인 경우
2-2	(위 2항의 답변이 B인 경우) 수의계약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계약요청부서가 법률 검토나 자체검토를 시행하였는가?	☐ A (검토를 시행함) ☐ B (검토내용 없음)	
3	계약특수조건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불공정 소지가 있는 경우, 계약요청 부서가 총괄부서 또는 지정번호사에게 법률검토를 받았는가?	☐ A (법률검토를 받음) ☐ B (법률검토를 받지 않음) ☐ 해당없음(특수조건 없음)	B가 1개 이상인 경우
4	전자입찰시스템(SRM) 상 의견조회 및 그에 따른 처리 결과를 확인 하였는가?	☐ A (확인하였음) ☐ B (의견조회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확인할 수 없음) ☐ 해당없음(의견조회 대상 아님)	
5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을 준수 하였는가?	☐ A (준수하였음) ☐ B (준수하지 않았음)	
6	계약상대방이 계열회사 또는 당사와 특수한 관계에 해당하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총괄부서 또는 지정번호사에게 법률검토를 받았는가?	☐ A (법률검토 시행) ☐ B (법률검토 미시행) ☐ 해당없음	

- ☐ 체크리스트 작성결과 '부적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요청건을 계약요청부서로 반송 처리
- ☐ 본 체크리스트는 구매계획 수립시 첨부함